

# 대전보건대학교 20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기준(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 기준)

< 학생취업처 학생팀 >

※ 해당 기준은 사정에 따라 학년도 또는 학기 별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, 확인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 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
2. 운영기간: 2026년 3월~6월, 9월~12월(8개월)
3. 지원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- 가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생, 신입생(고3,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) (대학원생 제외)
  - 나)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’86.1.1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  - 다)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  - 라)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  - 마)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    - \* 단,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
  - 바)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
    - 1) 신·편입생, 재입학생: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   - 2) 재학생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수준(70/100점) 이상을 획득한 자
      - \*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이며, 부분등록학기,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
      -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(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)이며,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, F학점,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
- 3)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
- 4)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
  - ※ 단,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직전학기 8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평균(70/100점) 이상인 자

4. 지원 제한대상:
  - 가)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
  - 나) 비정상적인 학사관리,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·변조 등의 방법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(최대 2년 범위 내)
5.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원(매학기 최초 1개월분(3, 9월)은 20만원 정액 지원)

6. 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

**주거 관련 비용** : 임차료(전·월세, 보증금 등), 주거 유지 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·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·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
 ※ 단, 보증금 월환산차입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

- \*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- \*\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입으로 산정함

7. 지원기간: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, 학제별·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

학제별 한도	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
	한도	4회	6회	8회
학생별 한도	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			

※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

8. 우선선발(지원) 기준

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(장학금)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,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

- ① 비(非)기숙사생
- ② 기숙사생
- ③ 기초생활수급자
- ④ 차상위계층
- ⑤ 다문화가정
- ⑥ 다자녀순
- ⑦ 이수학기가 많은 순
- ⑧ 연소자순(주민등록 기준)
- ⑨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)이 높은 자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제외)
- ⑩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
## 9. 지급제외

① 방학 중 지급 제외(계절학기 수강자 포함)

② 3월, 9월 중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제적) 발생자

- 단, 그 이후 학적변동 건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,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비용은 인정 및 지급

③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 및 기준 등 미준수자

- 요청서 제출기한, 제출서류, 소명 요청 등 대학 요구사항 미준수 시 미지급
- 장학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자

④ 교내장학금 중 『행복기숙사 장학금』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제외

⑤ 신청 학생의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교통권 상 '대전권' 인 자

⑥ 대전권 외에 거주하며, 통학하는 자

⑦ 기타 업무처리기준에서 제외하는 자로 보이나, 소명이 되지 않는 자

⑧ 대학의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(매년 8월 15일, 2월 15일 이전)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

※ 대전권: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·논산시·계룡시·금산군  
및 충청북도 청주시·보은군·옥천군